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안)

[3~5세 5만원 추가지원 포함]

2026. 1.

교 육 부
[영 유 아 정 책 국]

차 례

I. 사업 개요	1
II.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4
1. 유아학비 지원	4
2. 방과후 과정비 지원	9
III.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11
IV. 3~5세 5만원 추가지원	13
V. 행정(협조) 사항	15
[붙임 1]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	18
[붙임 2] 질병 결석 신고서 양식	20
[붙임 3] 저소득층 유아 학비 신청 안내(예시)	21
[붙임 4]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개인정보보호방침 안내	22
[붙임 5] 유아학비 지원 신청 양식	23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안내	26

I.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유아학비)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저소득층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 ※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 입학 기회 보장
-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 「유보통합 추진계획」(23.1.30.)에 따라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학비·보육료 단계적* 추가 지원
 - * 지원대상 : 5세('24년) → 4~5세('25년) → 3~5세('26년)

□ 2026년 지원내용

(단위 : 원)

구분	(유치원) 유아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누리운영비	(유치원·어린이집)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지원	총 지원금
국·공립 유치원	100,000	50,000	50,000	200,000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280,000	70,000	50,000	400,000

※ 위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외에 소득요건 등 조건에 따라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 세부 지원내용 ('26.3.1.부터 적용)

- 유아학비 및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분	지원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5세	2020.1.1.~2020.12.31.	100,000	280,000	280,000
	4세	2021.1.1.~2021.12.31.			
	3세	2022.1.1.~2023.2.28.			
방과후 과정비	3~5세	2020.1.1.~2023.2.28.	50,000	70,000	70,000

※ 2026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1월 예정)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 의한 미숙아인 경우, 생후 연령에서 조기출생 기간을 제외한 교정연령을 기준으로 입학 및 재원 가능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구분	자격	지원액(원/월)	비고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월 최대 200,000	- 학부모부담금(입학경비+교육과정비+방과후 과정비(특성화 교육활동비 포함)+기타경비) - 학부모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지원

구분	지원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3~5세	2020.1.1.~2023.2.28.	50,000	50,000	50,00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비고19에 따른 '26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외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

□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 2026년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 운영 방안 ◆

- (국·공립유치원) 유아 나이스 시스템 사용
- (사립유치원) 유아 나이스 시스템 또는 e-유치원 시스템 선택 사용 가능
- ※ 단, 최초 시스템 선택 후에는 학년도 종료 시(27.2월 말)까지 사용 시스템 변경 불가

- (신청방법)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구분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유치원 입금
-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지급 관련 유의사항 ◆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청구 및 정산은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
- 시도별 재정여건, 유아학비 지원 자격 정보 연계(‘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지연, 유치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이 일치해야 함
- (저소득층 유아 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지원기간

-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가능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 * ‘13.3.1.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제29조제1항)

II.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1. 유아학비

□ 지원대상 및 기간

-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3세반에 취학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 ‘23년 1~2월 생으로 3세반에 취학한 유아의 지원기간도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대상 아동(‘19.1.1.~’19.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총 3년의 지원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예한 1년에 한해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제외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함)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에 학적은 있으나 휴학으로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한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 해외 체류 기간 기산 시 출국일 포함
- [예시] 3월 1일 출국하여 4월 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3월 30일까지 지원 자격 보유)
-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 (재신청 누락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유아학비는 소급지원 불가)

- (지원 기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3년 초과 유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처리
- ※ ‘23.1.~2월생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 또는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 사전에 무상교육 기간(3년) 지원 및 지원 기간 초과시 보호자 자부담 발생 할 있음을 반드시 안내
- * ‘13.3.1.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지원기준

- (신규 신청)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 ‘유아학비 ↔ 보육료’ 간 변경(일할계산)

변경 구분	지원 기준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신청 후 입학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입학일보다 신청일이 늦을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 보육료	보육료 신청 전일까지 유아학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유아학비 ↔ 양육수당’ 간 변경

- ① ‘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15일 기준으로 계산)

변경 기준	지원 기준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① 양육수당 : 해당 월 미지원 ②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입학일이 신청일보다 늦은 경우 입학일을 변경신청일로 봄)
	16일 이후
	① 양육수당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② 유아학비 : 익월 1일부터 지원

- ②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15일 기준으로 계산)

변경 기준	지원 기준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① 유아학비 : 해당 월 미지원 ② 양육수당 : 해당 월 전액 지원
	16일 이후
	① 유아학비 : 변경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② 양육수당 : 해당 월 미지원(익월 1일부터 지원) ※ 유아가 유치원에 학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 할 경우 유아학비 일부가 미지급(학부모 자부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적 중단 후 변경 신청하도록 학부모에게 안내

☞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2026년 보육사업안내 p.277)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

□ 지원금 산정

공통 기준

- ❖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세부 사항은 아래 세부 기준을 따름(소급지원 불가*)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비용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 본 계획의 ‘교육일수’는 지원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개념으로써,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수업일수**’와 다름

*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 출석해야 하는 총 일수(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관련)

-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①~③에 의해 산정

❖ 휴일에 대한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 ❖

※ “휴일”은 공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재량휴업일을 의미함. 단, 휴일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업일수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예 : 토요일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평일과 동일하게 봄)

■ 휴일 전·후 출석여부에 따라 휴일에 대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휴일의 전후 모두 결석일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미인정

⇒ 휴일의 전후 중 하루라도 평일 출석 시,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 휴일 전후 교육일수 인정 특례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이 되는 경우에도 휴일은 교육일수로 인정 가능(예: 휴일 전날 출석인정결석 + 휴일 다음날 결석인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휴일 전후 모두 출석인정결석인 경우 휴일 교육일수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휴일 전후 평일 출석과 관계없이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 월의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 첫 번째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월의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마지막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중도 입학·학적변동 유아의 경우, 유아학비시스템상 입학·학적변동은 주말로 설정 불가 (월초·월말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유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말 설정 가능)

※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유아나이스, e-유치원)상 자동으로 입학/학적 변동일 혹은 교육일수 조정

- ① (입학 시) 입학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산정(일할계산)하되, 자격 신청일을 고려하여 결정

- 유아학비 자격을 3월 1일까지 신청하고, 유치원 개학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경우,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산정

※ 단, 유치원 개학일이 3월 15일 이후일 경우에는 개학일부터 지원금 산정

- 입학일보다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자격 신청일”을 입학일로 봄

- 개학일 이후 중간 입학한 경우, 실제 입학일 기준으로 산정

❖ 입학에 따른 교육일수 산정 예시 ❖			
유치원 개학일	유아 입학일	자격 신청일	지원 시작일
3월 3일	3월 3일	3월 1일	3월 1일
	3월 3일	3월 3일	3월 3일
	3월 16일	3월 18일	3월 18일
3월 24일	3월 24일	3월 1일	3월 24일

입학1) 3월 1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 개학일(3월 3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 280,000원(입학일 3월 1일 적용)
입학2) 3월 3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 개학일(3월 3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 280,000원 × 29(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261,935원 (입학일 3월 3일 적용)
입학3) 3월 16일에 입학하고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유아의 3월 지원액 ⇒ 280,000원 × 14(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126,450원
입학4) 3월 1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 개학일(3월 24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 280,000원 × 8(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72,258원

② (학기 중)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 및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단, '붙임 1(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일수로 인정)

※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

- 방학 중 지원금 산정 시, 국·공립유치원은 학기 중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신청 유아'에 대해서는 방학 기간에 유아가 방과후 과정 정상 출결 시, 해당 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가능

❖ 원비 산정예시 ❖	
(학기) 3월 18일~4월 17일까지 결석한 유아의 3~4월 유아학비 지원액	
⇒ 3월 지원액 : 280,000원 전액(교육일수 15일 이상)	
⇒ 4월 지원액 : 280,000원 × 13(교육일수)/30(해당월의 일수) = 121,330원	
(방학) 8월 4일~8월 25일까지 방학기간인 유아의 8월 유아학비 지원액	
⇒ (국·공립) 지원액 : 100,000원 × 9(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29,030원	
⇒ (국·공립 방학 기간 모두 방과후 신청+출석한 유아) 100,000(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 (사립) 280,000원(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③ (학적중단 시) 학적변동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산정(일할계산)

- 단, 유치원 연간 학사일정에 따른 졸업 시(5세반), 학기 중과 동일하게 교육일수 산정

※ 휴학도 학적중단 시 적용되는 유아학비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산정

❖ 학적중단시 학부모 안내 철저 ❖

- ▶ 유치원 학적중단(자퇴, 퇴학, 수료 및 졸업 후 가정양육 전환) 전에 자격 변경 신청 시 신청 일자부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되어 유아학비 지원이 불가함
- ▶ 유치원 학적중단이 완료된 이후 타 서비스(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등)로 자격 변경을 별도 신청(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지자체 방문 신청)하도록 학부모에게 안내 철저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부담비용 및 급여미지급분 등은 소급지원이 불가함을 안내)

❖ 학적중단 시 산정예시 ❖

- (예1)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 중이며, 6월 25일에 학적 중단한 유아의 지원액
⇒ 지원액 : 280,000원 × 25(교육일수) / 30(해당 월의 일수) = 233,330원
- (예2) 2월 19일에 졸업한 유아의 2월 지원액 ⇒ 280,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일 경우)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유아학비(교육과정비)에서 방과후 과정비 지급 불가 원칙이나, 방과후 과정의 교재·교구비와 간식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잔액으로 집행 가능(유치원 지도·점검 시 확인)

※ 시스템 상 급식비는 기타교육비에 포함하여 지원금 산정

□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청)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25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26년 유아학비 지원 가능

❖ 유의 사항 ❖

-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아학비는 소급지원 불가

- (자격결정) 대상자의 출생 연·월·일 및 신청자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자격 생성 (지자체 담당 공무원)
- (인증) 유아 보호자의 은행권 카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인증
 - *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아이즐거웁카드(현금카드 사용 불가), 아이사랑카드'
- (청구)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3·6·9·12월) (유치원)
 - * 신학기 유치원 학적 변동(입학 등)이 많은 관계로 4월에 추가 청구(1회) 실시
- (지원)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입금 (시도교육청)
- (출결관리)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에 대한 출결 상황 등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 (유치원)
 - * 유치원은 매일 유아의 출결상황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미연동(자격 미신청)되는 유아의 경우 반드시 학부모에게 자격 신청 안내
- (정산) 유아별 입학·학적변동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매분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정산(6·9·12월 및 다음연도 2월) (유치원)
 - *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2. 방과후 과정비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유아교육법 제12조·제13조)
 -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법 제2조)

□ 지원기준

-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
 - ※ 방과후 과정비 전액지원을 위한 월 최소 출석일수(15일) 및 15일 미출석 시 일할 계산 방법은 유아학비 산정기준과 동일

- 단, 보호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총 운영시간(8시간 기준) 중 방과후 과정 이용 시간 2시간 이내 조정** 시, 방과후 과정비 지급 가능

* 병원 진료 등에 따른 교육과정 지각 또는 방과후 과정 조기 하원 등

- ** (예시) ①교육과정(5시간)+방과후 과정(3시간) : 방과후 과정 1시간 이상 참여,
 ②교육과정(4시간 30분)+방과후 과정(3시간 30분) : 방과후 과정 1시간 30분 이상 참여,
 ③교육과정(4시간)+방과후 과정(4시간) : 방과후 과정 2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유의사항 ◆

- 시간 조정 유아가 발생하는 경우, 유아 수시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사전에 일정한 등·하원 시간을 마련하여 운영
- 학부모 동의없이 유치원별 일괄 운영시간 단축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유치원 운영(개방) 시간은 학부모 의견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결정(특히, 부모의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 운영 적극 권장)

-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가 일일 기준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 단, 재량휴업일·방학 기간·졸업 이후 교육과정 시간(09:00~14:00)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고, 이는 해당 방과후 과정비로 사용 가능하며,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

-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 방과후 과정 출석부, 참여 신청서 등 중빙 서류 구비 필수

□ 지원금 산정 방법 및 지원 내용

- (산정 방법)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방법과 동일
- (지원 내용)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III.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 '23년 1~2월생 입학한 유아 및 취학 유예 등 그밖의 지원 대상 포함

【 법정 저소득층 유형 및 기준 】

구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을 보유한 경우
차상위계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대상 자격(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을 보유한 경우
한부모가정	유아학비 지원 자격 유아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인 경우

- 지원 연령 및 기간, 보육료·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등은 기존 유아학비 기준과 동일(p.2~5 참조)

◆ 유의사항 ◆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가능(미신청으로 누락된 기간 **소급지원 불가**)
- 다만, '25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26년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지원 금액 및 산정방식

- 월 최대 20만원 [학부모부담금 : 입학경비+교육과정비+방과후 과정비(특성화 교육활동비 포함)+기타경비]
- 유치원 원비에 대한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
-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소급지원 불가**), 지원금 산정은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일수'에 따름(P.6~8 참조)

□ 지원절차

- (보호자 신청)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붙임5]
- 신청자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6]

- (자격확인) '유아학비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 신청자, 지원 대상 유아의 출생 연·월·일,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 여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해당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 (청구)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3·6·9·12월) (유치원)
- (지원)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입금 (시도교육청)
- (출결관리)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의 출결 상황 등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 (유아학비와 동일)
*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결 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정산)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정산(6·9·12월 및 다음연도 2월) (유치원)

IV.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지원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26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대상과 동일
 - ※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20.1.1. ~ '23.2.28. 출생) 유아
 - 취학대상 아동('19.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지원항목
 - (유아학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 유아학비(교육과정비)에서 방과후 과정비 지급 불가 원칙이나, 방과후 과정의 교재·교구비와 간식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잔액으로 집행 가능(유치원 지도·점검 시 확인)
 - (보육료) 보육 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관리·운영비 등 보육에 필요한 비용
- (지원기간) 1년('26. 3. 1. ~ '27. 2. 28.)
- (지원기준)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지원 및 양육수당 간 변경 지원에 관한 기준은 유아학비와 동일한 지원 기준을 적용
- (지원금 산정) 산정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 출결, 학적 중단 등은 유아학비 지원 기준을 적용

- (정산)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정산 실시
 - 사업종료 후 '27.3월 말까지 지자체 교부금 정산결과를 포함한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지원금 정산결과를 교육부에 제출
- (집행잔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을 차년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반영

□ 보육료 관련 지자체 예산 지원 협조 (어린이집 예산)

- (교부방법)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보육료 예산 신청(지원인원 및 지원 금액 등 포함) 후,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예산 교부
- (교부액)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에 대해 월 50,000원의 보육료 추가지원금을 지자체에 지원
- (교부시기)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 ※ 정산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교부 시기 조정 가능
- (정산)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매분기 종료 후('26년 4월·7월·10월·'27년 1월) 20일까지 시도교육청으로 제출
 - ※ 정산 시기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월별 또는 분기별 가능
 - ※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 별첨 필수

V. 행정(협조) 사항

□ 시도교육청

- (공통)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운영
- 자체 세부 지원계획 수립 및 상시 지도·점검체계 구축·운영
 - ※ 타 복지 서비스와의 중복 지원 및 부실한 출결 관리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 입·퇴원 및 출결 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 자격 등 홍보 강화

◆ 설명회 주요 안내사항 ◆

- 유아학비 지원 개요 : 대상, 지원 단가, 신청·지원 절차 등 **(소급지원 불가)**
- 무상교육 기간(3년) 종료 시 유아학비 지원 중단 등
- 타 복지서비스(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로 변경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자격 변경 신청 필요(신청 누락시 **자부담이 발생하며 소급지원 불가**)

※ 설명회 등에 불참하여 안내받지 못한 경우, 유선 등으로 반드시 개별 안내

○ 입학(신규 신청) 또는 타 복지서비스로 변경 신청 시(보육료·양육수당 →유아학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 보호자의 유아학비 신청 지연 및 보육료 등으로 잘못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 시 유아학비 지원 신청 유무 반드시 확인·안내
-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전제로 지원하므로, 타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 신청으로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상실하면 지원이 중단됨을 사전 설명

○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시스템’에 대상자 등록·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자격 미수신 유아의 경우 일반등록(예 : 자격 미수신자, 무상교육 기간 초과자 등), 직권등록(예 : 후견인 보호자 등)으로 관리 가능

* 단, 일반등록 유아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자격 미수신자의 경우 학부모에게 유아학비 신청 여부 확인을 반드시 실시(SMS 발송 기능 등 활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유아·보호자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의 의무화

※ [붙임4] 관련. 단, 유아의 보호자가 동의서를 기 제출한 경우 생략

○ 정부지원금 인상 확정 전 심의 또는 결정된 유치원별 원비가 정부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가능

※ [예시] 유치원 원비 34만원 < 정부지원금 35만원 ⇒ 35만원 전액 지원 가능

□ 지방자치단체

○ (공통)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운영

○ 유아학비(저소득층 유아학비 포함) 신청 접수 및 자격 결정·중지 업무 관련, 시도 및 시·군·구 보육담당 부서의 적극 협조 요청

- 접수 시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아의 유치원 입학·학적중단 여부 및 입학·학적중단 예정일 확인 등 실시하여 자격 책정 오류 방지

※ 학적중단 : 자퇴, 퇴학, 수료 및 졸업 후 가정양육 전환

- 신속한 자격 결정·통지로 원활한 유아학비 청구·정산 업무 협조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자격 미수신 유아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

-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국 신청건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지 관할 외 지역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접수 시 유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즉시 이관 협조 요청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20.2.27) : 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라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 신청 가능

- 유아학비 부정수급 사전 차단을 위해 31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 체류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즉시 처리

※ 자격 중지 처리 지연으로 유아학비 청구·정산 시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자격 중지 변동 알림 시 즉시 조치 협조 요청

○ 신청 및 통보 절차 등 학부모 안내 요청 사항

구분	내 용
신청 방법	■ 신규·변경(상실포함)대상자 : 신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자격보유자(유아학비 자격 기(既) 보유자) : 신청제외 ■ 저소득층 유아학비 자격 기(既) 보유자 : 신청제외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붙임5] ■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 확인(신분증 등) ■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6] * 유아의 사실상 보호자가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
자격 통보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 중지, 상실 등) 안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자격정보 등 연계

□ 단위 유치원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등록하는 **유아 정보***는 **유아의 생활기록부 및 방과후 과정 운영사항과 동일**하게 등록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도로명 주소, 도로명 상세주소, 방과후 과정 여부,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보호자관계, 교육과정(학급구분, 학급명), 방과후 과정(학급구분, 학급명), 입학일, 방과후 과정 시작일, 방과후 과정 종료일
 - 유치원 유아의 학적중단(자퇴, 퇴학, 수료 및 졸업 후 가정양육 전환) 시 반드시 학부모에게 **보육료 또는 가정 양육수당 신청** 안내 필요(“미신청시 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 받을수 없으며, **소급지원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 * 유아의 학적중단시 자격 변경 신청 누락으로 인한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
 -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는 **해당 학년도 내 전액 집행 원칙**
 - 유치원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가 불용되거나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철저
- ※ 「사립학교법」 제32조의4 및 제51조에 따라 관할청은 유치원의 이월금이 재정 규모에 비해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23.7.3., 교육부)」 26페이지 ❖

 - 공통과정지원금 및 방과후과정지원금은 해당 학년도 내 전액 집행 원칙
 - 공통과정지원금 및 방과후과정지원금 집행 잔액 발생 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및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학년도 유아의 직접 교육경비로 편성·우선 사용
 - 과도한 집행 잔액이 남은 유치원은 다음 학년도 원비 인상을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집행 잔액의 연례적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권고
- 집행 잔액 발생 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및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학년도 유아의 직접 교육경비*로 편성·우선 사용**
 - * (예시) 교재교구비 및 급·간식비 등 유아가 직접 혜택을 받는 항목으로 편성 가능, 교직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간접비로 사용 불가

붙임 1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유치원생기부작성및관리지침 개정안 반영)

□ 다음의 경우는 교육일수에 포함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미세먼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등교시간대(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나쁨 이상)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 하고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감염병 상황으로 유치원 시설 폐쇄 또는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포함(단, 유치원 자체 결정에 따라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미포함)
3.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교외체험 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은 정규 수업일에만 신청 가능
4.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5. 다음의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유아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예: 부모의 출산)
7.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 원격수업 참여 일수
 - * 원격수업은 정규 수업일에만 운영 가능
8.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붙임2】 결석계(질병 결석 신고서) 징수·보관

□ 유의사항

- 학부모는 유아 교육일수 인정특례 각호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참가 신청서, 결석계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유치원에 제출**해야 함
- 소관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점검 시 **출석부와 증빙서류 대조** 필수
- 수업일수에 포함되는 교육과정 시 위의 특례에 따라 교육일수로 인정 되는 경우, 당일 방과후 과정은 동일 사유로 인정 가능
- 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최대 인정일수에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음(예: 금요일·월요일 질병결석 시 토·일요일은 관계없이 8호 사유로 2일 인정)
-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 시 3호(교외체험학습)·7호 외 사유만 적용 가능하며, 8호는 연간 인정 가능한 범위(30일) 내에서 적용 가능
- 제6호를 사유로 교육일수를 인정받는 경우, 반드시 '부득이한 사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붙임 2

질병 결석 신고서 양식 ※ 2025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결 석 계

담임	교무	원감	원장

반 : _____

성 명 : _____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하고자, 하였으므로)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 결석사유 :

2. 결석기간 :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

■ 결석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1.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
2. 병원 처방전 또는 약 봉투 ()
3. 기타 ()

* 증빙 서류는 확인용임

■ 확인 후 처리 방법 : 회수(), 파쇄요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결석 업무 처리	반, 성명, 보호자 성명,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유아교육법」 제14조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

20 년 월 일

보호자(법정대리인) 서명 :

(서명 또는 인)

○○유치원장 귀하

※ 결재란은 예시이며, 유치원 등에 정해진 위임전결규정으로 대신할 수 있음

붙임 3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안내(예시)

2026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하세요(예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하오니,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도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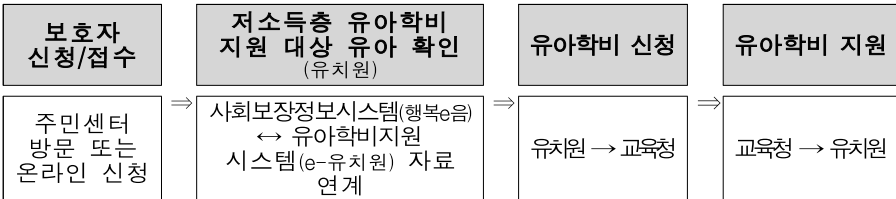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한부모 가정 아동이거나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 또는 차상위 대상 자격을 보유한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 지원 내용

대상	지원금액	비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월 최대 20만원	• 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비+방과후 과정비+특성화활동비)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지원절차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무실) 02-123-4567, (행정실) 02-123-4568, (에듀콜센터) 1544-0079~5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2026. . .

○○○○유치원장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유아교육법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다루는 만 14세 미만의 학생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학부모(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아학비지원시스템 홈페이지 하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을 확인하신 후 동의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절 취 선-----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예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유아성명, 유아주소, 학부모 성명, 학부모 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학부모 핸드폰번호, 학부모 e-mail주소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유아 나이스 및 e-유치원) 등록 및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자료연계	유아 최종 학적종단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유아학비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이용 기간
교육부 및 시도 교육(지원)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보건복지부(사회복지통합망)	유아성명, 유아주소, 학부모 성명, 학부모 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학부모 핸드폰번호, 학부모 e-mail주소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유아 나이스 및 e-유치원) 등록 및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자료연계	유아 최종 학적종단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유아학비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항목	근거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유아 나이스 및 e-유치원) 등록 및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자료연계	주민등록번호(유아, 학부모)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3

20 . . .

유아 성명 :
학부모(법정대리인) 성명 : (인)
연 락 처 :
관 계 :

○○ 유치원장 귀하

※ 수집된 개인 정보는 법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며, 목적 달성 및 보유기간이 경과 시 즉시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5 유아학비 지원 신청 양식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6.1.1.> (3쪽 중 1쪽)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첫만남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¹⁾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사유)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 보육료지원 • 유아학비지원 •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포함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0~2세) 연장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0~2세) 연장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0~2세) 연장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0~2세)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0, 1세 아동은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어린이집(0~2세)로 신청하면 됩니다. * 동일보장기관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 가사간병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신청조건(1개 선택)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장 ☐ 월 24시간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월 27시간 ☐ 장기요양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															
				서비스시간															
	[] 장애아동 가족지원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9세 미만)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재활 ☐ 청능재활 ☐ 미술심리재활 ☐ 음악재활 ☐ 행동재활 ☐ 놀이심리재활 ☐ 재활심리 ☐ 감각발달재활 ☐ 운동발달재활 ☐ 심리운동 ☐ 기타()																
지원대상자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발달상담 ☐ 언어재활 ☐ 기타 ()																
		장애유형 (부모 또는 조부모)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영유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대상자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지원유형	☐ 주간활동서비스 (☐ 기본형 ☐ 확장형) ※ 확장형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 방과후활동서비스																

1) 부모급여(차액) 지급계좌로도 활용됩니다. 0,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자격 신청 시 부모급여(차액)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좌정보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2쪽)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1개 선택)	☐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 ☐ 가족돌봄청년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유형	서비스 유형 (중복체크 가능)		서비스명		
			☐ 기본서비스				
			☐ 특화서비스				
	※ 기본서비스 유형별 특화서비스 이용가능 개수 : 1개(A형), 2개(B형), 선택 불가(C형) ※ 기본서비스 미이용시 특화서비스 이용가능 개수: 2개(D형)						
	[] 긴급돌봄지원	지원대상자					
		지원 유형	☐ 기본돌봄 서비스 ☐ 방문돌봄 서비스				
신청 사유 (중복체크 가능)		☐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등으로 필요한 경우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필요한 경우 ☐ 타 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 중인 경우 ☐ 재난피해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중앙육자 신청가능		
[]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자						
	긴급활동지원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신청유형	☐ 신규신청 ☐ 변경신청 ☐ 갱신신청 ☐ 노인장기요양원환자 지원				
		변경신청 사유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장애상태의 변화 ☐ 학업생활 ☐ 직장생활 ☐ 학업가중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거주지 이전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조손가정 (19세 미만) ☐ 한부모가정 (19세 미만) ☐ 기타				
		특별지원급여	☐ 출산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결혼 ☐ 사망 ☐ 출산 ☐ 입원 ☐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지원대상자					
	[] 첫만남이용권	출생정보	출생정보		출생순위		첫째아
		지급방식	☐ 바우처(원칙) ☐ 현금(시설보호 아동 등) ☐ 현금(보호자명의 계좌)				
		카드정보 (국민행복카드)	☐ BC(은행) ☐ 삼성 ☐ 롯데 ☐ KB국민(은행) ☐ 신한				
		카드정보 (국민행복카드)	※ 유의사항 - 신규신청자의 경우, 발급 희망 카드사 및 회원 은행사(BC, KB카드를 선택한 경우)를 선택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 정신건강 심리 상담 바우처사업	지원대상자						
	지원 유형	☐ 1급 유형 ☐ 2급 유형					
	기관에서 심리상담 필요성 인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 대학교상담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ee센터/Wee클래스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수행기관 ☐ 정신의료기관 ☐ 기타 기관					
	그 외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진(우물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 우울 확인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재난피해자					
보 건 소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인력1명 ☐ 인력2명) ☐ 삼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 인력2명 ☐ 인력3명) ☐ 사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인력4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기본 지원대상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소득기준 이하				
		신청요건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산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미숙아 출산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지원대상자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지원 유형	☐ 기저귀 (☐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예외지원대상 (지자체재제 사업)	☐ 기저귀 (☐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과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학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공이용)을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급여 신청을 각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확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장보육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임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첫만남이용권 지원신청 시 시설임소아동, 보호자가 수행자인 경우,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자, 보호자 여부 확인 이 필요할 경우 및 미혼부 자녀로 범법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7.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의 경우, 신청요건에 따라 아래의 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의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의뢰된 경우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심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 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국가 정신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 우울이 확인된 경우 :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 보호확인서
	8.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의 경우, ①의사진단서, 소견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등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돌봄 제공자 부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입원(퇴원)확인서, 주돌봄자의 사망신고서 등 긴급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²⁾)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

구 분	기초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자활대상자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정 아동						
	유아 성명							
정보제공 동의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동의여부 동의	부동의	서명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에 제공하여 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관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관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	작성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이용 기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관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관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	작성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항목	근거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관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주민등록번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참고1 학적처리 사용 용어(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1)

사용 용어	용어 설명
입학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기간 중 최초로 유치원에 들어감
재학	당해 유치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재입학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우리 유치원에 다시 들어옴(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
편입학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다른 유치원에 다시 들어감
전입학	다른 유치원 유아가 우리 유치원 재학생이 됨
전출	다른 유치원으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유치원으로 학적을 옮김
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불가)
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특수교육대상유아에 해당)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특수교육대상유아에 해당하며, 유치원규칙에 따라 '정원외학적관리' 할 수 있음)
복학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유치원에 들어옴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중인 자 (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특수교육대상유아에 해당)
자퇴	전출, 휴학 이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우리 유치원에서의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중단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유아는 불가)
퇴학	유치원규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
수료	유치원규칙에 따라 해당 연령의 교육과정을 이수함
졸업	유치원규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침

참고2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활동

□ 위기경보수준에 따른 유치원의 대응

구분	위기 유형		주요 대응 활동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형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 환자 발생 감시체계 운영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교육연속성계획(ECP) 수립 (환자 발생 지역) · 환자 발생 감시체계 운영 · 환자 발생 지역의 전파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 교육연속성계획(ECP) 수립 (환자 발생 지역) · 환자 발생 현황 파악 · 환자 발생 시 대응 · 위기 소통채널 운영 · 각종 행사 연기 또는 취소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교육연속성계획(ECP) 수립 (전체 지역) · 환자 발생 현황 파악 및 보고 · 환자 발생 시 대응 · 휴업 및 휴원 검토 · 위기 소통채널 강화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유치원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1505, 2024.4.8.)

□ 위기정보수준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대응

구분	위기 유형		주요 대응 활동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 구체적 방안 검토 · 환자 발생 감시체계 운영 · 각종 예방활동 · 방역당국과의 협조체계 점검 ·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 현황(방역물품 등)을 파악 · 모의훈련 실시 ※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병관리청)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감염병 대응 대책반 구성·운영 · 환자 발생 감시체계 운영 · 감염병 예방 정보 제공 · 위기 소통채널 확보 ※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질병관리청)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 감염병 대응 대책반 확대 운영 · 감시 강화 지역 범위 및 대응 방안 결정 · 감염병 대응 자원(방역물품 등) 보급 및 확충 · 환자 발생 감시체계 강화 운영 · 휴업 및 휴교 검토 · 학교 교육과정(현장체험학습 등) 조정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보건복지부)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감시 및 대응 강화 · 감염병 관리 현황 모니터링 (예방교육, 위생관리, 방역 등) · 「집단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지침」 준수 · 시도교육청 대책반 확대 운영 · 감염병 협의체(필요시) 협력 강화 · 환자 발생 감시체계 강화 운영 · 휴업 및 휴교 검토 · 학교 교육과정(현장체험학습 등) 조정 - 체험 및 단체활동 금지 및 자제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행정안전부)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유치원용)」(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1505, 2024.4.8.)

참고3 관련 법령

<관련법령>

가.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 ②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관련규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비고 19>

19.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각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은 1인당 추가 지원 금액에 측정항목 제6호가목(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1)을 곱하여 산정한다.